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59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0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3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4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6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7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준보훈병원”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7. “위탁병원”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

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6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7항 및 제42조의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6항 및 제51조의3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을 “한다), 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 준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상군경등의 준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 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준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鎮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준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준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의 진료비용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준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본문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준보훈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준보훈병원</u> ”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신 설>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7. “위탁병원”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
6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
조제2항·제7항 및 제42조
의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
조제2항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7조제2항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4조제2항 및 제34
조의2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①

한

다), 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1.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제17조제3항 및 제6항	<삭 제>
2.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42조제2항·제7항 및 제42조의2	<삭 제>
3.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2항	<삭 제>
4.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2항	<삭 제>
5.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삭 제>
6.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삭 제>
7. 「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	<삭 제>
8. 「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51조제2항·제6항 및 제51조의3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u>보훈병원</u>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	② ----- ----- <u>보훈병원, 준보훈병원</u> ----- -----

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신 설>

[illegible][illegible]

제9조(전상군경등의 준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
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준보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
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진통·진양(鎭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u><신 설></u> <u>제9조 · 제9조의2</u> (생 략) <u>제10조</u>(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	<u>다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 급여대상</u> <u>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준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준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 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진료비 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 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 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 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u> <u>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u> <u>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 급여대상의 진료 비용</u> <u>제10조 · 제10조의2</u> (현행 제9조 및 제9조의2와 같음) <u>제11조</u>(진료비용의 산정 등) ----
---	---

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보훈병원, 준보훈병원 -----

-----.

제12조·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4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보훈병원, 준보훈병원 -----

-----.

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 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u>제14조</u> ~ <u>제19조</u> (생 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5조</u> ~ <u>제20조</u> (현행 제14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